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전 위반 사실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노원구청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 첨부파일(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시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자원순환과(☎ 02-2116-3807, FAX 02-2116-4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